

③-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-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(행안부장관→지자체)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(지자체→행안부장관)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,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.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20	2021	2022	2023	2024
지방채발행한도액(A)	224	250	229	251	353
발행액(B)	0	0	0	0	0
발행비율(B/A*100)	0	0	0	0	0

우리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3억원 이지만, 발행액은 없습니다.

③-8 일시차입금 현황

-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.

우리 순창군의 2024년도 일시차입금은 해당없습니다.